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동기를 유발시키고,

나. 지역경제 실업률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주군세 감면의 추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2)

나.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시한의 근거를 위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함.

4.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3조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지방 선도산업 중 고용창출의 기업에 대한 지방자체단체가 기업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감면 근거를 두어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 결론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의 근거로 조세감면을 통한 지방의 한시적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형식적 절차로 입법예고 기간과 준칙의 내용에 저촉함이 없어 법적근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감면 해당기업에 대한 적용시점과 감면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

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도로,하천부지,공유수면의 무단점용에서 국·공유지의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 사용의 미신고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보상금 지원근거를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인 “성주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성주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로 함.

나.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제1항제4호, 안 제4조 제1항 제8호)

다.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급기준을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에서 국·공유지의 점용이나 부정 급수 또는 지하수 사용의 미신고자 등으로 확대하여 포상금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안 제4조제1항제6호)

4.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나. 경상북도 세정과-3775(2010. 3. 16)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의 목적은 지방세수의 누락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방안의 확대이며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원인 자동차세 체납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에 근거하여 체납액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점용 제보자에서 보다 적극적인 세원확보와 조세공평주의 실현을 위해 사실상 무상이득을 위하는 국공유지의 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징수할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여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구하고자 함으로

○ 지방세법의 징수촉탁 근거와 지방재정법의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재원 확충과 조세공평성 및 사용자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써 입법예고를 거쳐 중앙정부의 권고(안)과 경상북도의 준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